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 역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및 문화예술회관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 공무원인 무대장치사(기계,조명,음향)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잦은 이직 및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성주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문화재담당 인력보강
- 기능직 → 별정직(6급상당)으로 전환

나. 문화예술회관
- 계약직 3명 → 별정직으로 전환
·분야 : 무대기계전문인(7급상당), 무대조명전문인(7급상당),
무대음향전문인(7급상당)

3. 참고사항

가.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2조

나. 기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호중 제17호 내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문화재관리원
18. 무대기계전문인
19. 무대조명전문인
20. 무대음향전문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지정) (현행과 같음)
1.~16. (생 략)	1.~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문화재관리원
〈신 설〉	18. 무대기계전문인
〈신 설〉	19. 무대조명전문인
〈신 설〉	20. 무대음향전문인